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raft and Issues for the Revision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이 강 빈**
Kang-Bin Lee

〈 목 차 〉

- I. 서 론
- II. UNCITRAL 중재규칙의 특성
- III.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 IV.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과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 중재규칙의 비교 검토
- V. 결 론

주제어 : UNCITRAL 중재규칙, 중재작업반, 중재규칙 개정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UNCITRAL 모델중재법

* 이 논문은 2006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I. 서론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은 1976년 4월 28일 UNCITRAL 제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동년 12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이 규칙에 관한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 4장과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UNCITRAL 중재규칙의 제정목적은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중재의 가치를 인정하여 법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를 위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경제관계의 조화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UNCITRAL 중재규칙은 국제상사중재기관 및 센터들과 광범위한 의논을 거쳐 준비되었고 적정한 심의를 거쳐 UNCITRAL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특히 상사계약에서 중재규칙을 언급함으로써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UNCITRAL 중재규칙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

한편 UNCITRAL 중재규칙의 적용범위는 계약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분쟁은 본 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변경에 관한 수정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리고 본 규칙의 어느 규정이 당사자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국제중재에 이용되고 있는 UNCITRAL 중재규칙이 국제중재실무 및 UNCITRAL 중재법과 더욱 잘 조화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작업반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의 많은 조항들의 개정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UNCITRAL은 그의 제36차 회의(비엔나, 2003. 6. 30-7. 11), 제37차 회의(뉴욕, 2004. 6. 14-27) 및 제38차 회의(비엔나, 2005. 7. 4-15)에서 UNCITRAL 중재규칙 개정문제를 사전에 토의하였다. 한편 중재작업반 제44차 회의(뉴욕, 2006. 1. 23-27)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신화 또는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의 목록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업변호사들과 예비적 의논을 하도록 제안되었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 국제중재센터와 협력하여 2006년 4월 6일-7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을 현행 국제중재실무 및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관련규정과 더욱 잘 조화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의 많은 조항들을 개정할 것이 제안되었다.

1) UNCITRAL Resolution 31/98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5 December 1976.

그 이후 UNCITRAL 제39차 회의(뉴욕, 2006. 6. 19-7. 7)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의 성공 및 지위를 인정하여, UNCITRAL은 중재규칙의 본문구조, 정신, 입안방식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본문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본문의 유연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한편 중재작업반 제45차 회의(비엔나, 2006, 9, 11-15)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초안을 위한 예비적 방침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UNCITRAL 사무국에서 이러한 방침을 고려하여 작성한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초안의 문안과 주석이 추후 회의에서 검토를 위하여 2006년 12월 6일 배포되었다.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국내의 정기인(1992), 국외의 Pieter Sanders(2001) 및 Stewart Abercrombie Baker(1992) 등의 UNCITRAL 중재규칙의 내용 설명과 적용사례의 소개 등이 있을 뿐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문제에 관한 연구논문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UNCITRAL 중재규칙의 구성 및 특징을 설명하고, 그동안 UNCITRAL 및 중재작업반 회의에서 토의 제시된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초안의 내용과 쟁점사항들에 관하여 고찰하는 동시에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과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비교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UNCITRAL 중재규칙의 특성

UNCITRAL 중재규칙은 표준적인 중재규칙으로서 1976년 제정되었으며, 1980년에 보완되었는데, 이 규칙은 주로 임시중재(ad hoc)²⁾에 이용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그들의 임시중재를 수행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중재를 위한 규칙인 UNCITRAL 중재규칙을 기관중재를 위한 규칙인 ICC(국제상업회의소)중재규칙, AAA(미국중재협회)중재규칙, LCIA(런던국제중재법원)중재규칙 등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CITRAL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절차의 수행 및 중재판정의 부여를 취급하는 규칙의 완전한 세트이며, 전세계적으로 시험되었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때때로 당사자들이 그들의 중재계약에서 어느 중재규칙이 그들의 중재절차에 적용될 것이라는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이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은 또한 유용할 수

2) 임시중재라 함은 2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재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현존 또는 장래의 분쟁에 관계없이 절차를 관리하거나 중재절차규칙을 제공하는 중재기관 없이 이루어지는 중재로 쓰이기도 하는데, 국제중재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일반적이다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p.23.).

있다.

둘째, 당사자들이 UNCITRAL 중재규칙을 선호하는 경우에,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전에 그들의 중재계약에서 중재인 선정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고도로 권고되고 있다. 즉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면, 한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때에 중재인 선정권자가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중재인들의 기피 및 대체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권자를 지명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문제가 중재도중에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사무국장에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중재인 선정권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³⁾

셋째, UNCITRAL 중재규칙은 원래 통상적인 상사중재를 위한 절차적 틀을 제공할 의도였기 때문에, 임시중재에서의 절차적 규칙으로서 그리고 중재기관의 주축로 진행되는 중재를 위한 기관적 절차로서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중재기관들이 국제중재를 위한 중재절차로서 UNCITRAL 중재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자체 절차적 규칙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저명한 중재기관들도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여 진행되는 중재를 위하여 관리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⁴⁾

넷째, UNCITRAL 중재규칙의 경우 그 속에 포함된 보편성과 비현실성은 중재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는 그의 이용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즉 임시중재는 사무조직과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UNCITRAL 중재규칙과 같이 세분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상당한 시간⁵⁾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⁶⁾ 임시중재가 진행될 수 있는 속도는 관여기관이 없는 경우에 보다 빠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절차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이 항상 중재판정부의 선정 또는 채택될 절차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항상 임시중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⁷⁾

3) UNCTAD/WTO International Trade Centre,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How to settle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2001, p.68

4) David D. Caron, Lee M. Caplan and Matti Pellonpaa,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9.

5) UNCITRAL 중재규칙 제2장 중재판정부의 구성에서 중재인선정권자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소요시일은 약 163일(5개월반)이 걸리고, 또한 3인 중재인의 선정에 소요시일은 약 192일 (6개월반)이 걸린다 (정기인, 「상사중재론」, 무역경영사, 1992, pp.233-235).

6) 정기인, 전제서, pp. 230-233.

7) Andrew Tweeddale and Keren Tweeddale,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 International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96.

Ⅲ.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1. 총 칙 (제1장)

(1) 적용범위 (제1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1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분쟁은 본 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당사자가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변경에 관한 수정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의 개정안은 현행규정을 수정하여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선택 1안은 현행규정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계약적이든 아니든 정의된 법적 관계에 관한 그들 간의 분쟁”으로 수정하며, 그리고 현행규정중 “당사자가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변경에 관한 수정에 합의했을 경우”를 “당사자가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변경에 관한 수정에 합의했을 경우 중재개시일자에 유효한” (변형2안)으로 수정하거나 현행문안 다음에 “당사자들이 그들의 합의일자에 유효한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중재개시일자에 유효한 규칙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 된다.” (변형3안)라고 추가하고 있다.

선택 2안은 현행규정중 “계약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를 “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그리고 현행규정중 “당사자가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변경에 관한 수정에 합의했을 경우”를 “당사자가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변경에 관한 수정에 합의했을 경우 중재개시일자에 유효한” (변형2안)으로 수정하거나 현행문안 다음에 “당사자들이 그들의 합의일자에 유효한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중재개시일자에 유효한 규칙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형3안)라고 추가하고 있다.⁸⁾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에서 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부탁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 및 그에 대한 변경은 서면이어야 한다는 제1조 제1항의 요건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서면요건의 삭제에 있어, 형식의 문제는 적용할 법률에 맡겨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여졌으며, 많은 중재규칙들이 그들의 적용가능성의 조건으로서

8) UNCITRAL Doc. A/CN.9/WG.Ⅱ/WP.145, 6 December 2006, p.3.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하였다.⁹⁾

그러나 서면요건에 대한 언급의 유지는 그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이 없다는 사실, 즉 약간의 관할구역에서는 이 요건을 생략하고 있으며 다른 관할구역에서는 서면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특히 필요하다고 말해졌다. 작업반은 중재합의 및 중재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서면요건의 유지여부에 관한 문제는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¹⁰⁾

작업반은 제1조 제1항이 “계약관련”분쟁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용어들이 당사자들이 중재에 부탁할 수 있는 분쟁의 형태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제외하지 않도록 생략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작업반은 제1조 제1항에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라는 용어의 포함에 대하여 약간의 지지가 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포함은 중재규칙과 널리 채택된 UNCITRAL 모델중재법간의 일치를 촉진시킬 것이지만, 이러한 용어는 단순히 하나의 제한을 다른 제한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중재규칙의 범위를 제한하여 본문의 확실성을 훼손할 해석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졌다. 따라서 바람직한 접근은 전혀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것일 것이라고 말해졌다.¹¹⁾

(2) 중재신청통지(제3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3조 제3항은 중재신청통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a) 중재에 회부할 분쟁건의 청구내용, (b)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c) 중재부탁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서, (d) 분쟁이 발생원인이 된 당해계약, (e) 손해배상청구의 개요와 청구액의 명시, (f) 청구하는 구제방법, (g)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의 중재인수(1인 또는 3인)에 관한 제안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의 개정안은 현행규정중 “(g)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의 중재인수(1인 또는 3인)에 관한 제안”을 수정하여 “(g)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의 중재인수 또는 중재언어 및 중재장소에 관한 제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있다.

“제5항. 중재신청통지의 수령후 30일내에, 피신청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a) 중재에 회부할 분쟁건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 (b)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c) 중재합의서 그리고 중재신청통지에서 원용된 분쟁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대한 의견, (d)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청구액에 대한 의견, (e) 청구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 (f) 중재인수, 중재언어 및 중재장소에

9)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27, 29.

10)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30-31.

11)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32-33.

대한 의견.”

“제6항.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에는 또한 다음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a)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재인 선정권자의 선정을 위한 제안에 대한 의견, (b)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중재인의 선정을 위한 제안에 대한 의견, (c) 제7조 또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인 선정통지에 대한 의견, (d) 관계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액의 명시 및 청구하는 구제방법을 포함하는 반대손해배상청구의 개요.”

“제7항.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통지의 불이행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로부터 중재를 방해하지 않는다.”¹²⁾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에서 중재통지의 내용을 취급하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은 중재절차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상세한 또는 추가적 정보를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중재통지는 (단순한 계약의 언급 보다 오히려) 그 계약의 사본을 포함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위하여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제3조 제3항(e)의 “개요“ 용어를 ”일반적 성질“ 용어로 대체하는 개정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중재통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완전한 중재통지를 취급하는 방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가 있었다. 또한 중재통지의 과중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외된 약간의 항목들이 제4항에 임의적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중재판정부가 불완전한 중재통지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자는데 지지가 표시되었다.¹³⁾

작업반은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에 답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구성이전에, 그리고 신청인이 그의 중재신청서의 제출이전에 그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가 여부를 검토하였다. 중재통지에 답변할 피신청인의 권리의 포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졌으며, 그러한 제의에 지지가 표시되었다.¹⁴⁾

(3) 중재인 지명 및 선정권자(제4조의 2)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에는 중재인 지명 및 선정권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바,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지명 및 선정권자에 관한 제4조의2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있다.

“제1항. 당사자가 이 규칙에 의하여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행동할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12) UNCITRAL Doc. A/CN.9/WG.II/WP.145, 6 December 2006, p.9.

13)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50, 52, 53, 54.

14)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57.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권자의 신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재인 선정권자가 이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거부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중재인 선정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중재인 선정권자는 그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당사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한 당사자와 중재인 선정권자 또는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 간에 모든 요청 또는 기타 통신의 사본들은 또한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4항. 중재인 선정권자가 제6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요청받는 경우에, 요청을 하는 당사자는 중재신청통지서의 사본 그리고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중재인 선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 중재인 선정권자는 독립적이며 공평한 중재인의 선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의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의 성명이 중재인 선정을 위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자격요건에 관한 기술과 함께 그들의 성명, 주소 및 국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항.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권자는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그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¹⁵⁾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에서 이 조항은 중재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뿐 만 아니라 중재절차 도중 어느 때라도 당사자에 의해 지명될 수 있는 중재인 선정권자의 지명 및 역할을 다루기 위해 의도된 것이며, 특히 임시중재의 전후관계에서 중재인 선정권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당사자에게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졌다. 그 조항은 중재인 선정에 관한 제6조 및 제7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6조 및 제7조를 단순화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제8조는 제4조의2 (3) 및 (5)에서 대체될 것이므로 삭제될 것이라고 말해졌다.¹⁶⁾ 한편 작업반은 중재인 지명 및 선정권자의 기능과 역할이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¹⁷⁾

15) UNCITRAL Doc. A/CN.9/WG.Ⅱ/WP.145, 6 December 2006, pp.11-12.

16)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41.

17)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42.

2. 중재판정부의 구성(제2장)

(1) 중재인수(제5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5조는 “당사자가 중재인수(1인 혹은 3인)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신청통지를 피신청인이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인을 1인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인은 3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선택1안으로 현행규정을 수정하여 “당사자가 중재인수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신청통지를 피신청인이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인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인을 1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2안으로 현행규정을 수정하여 “당사자가 중재인수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신청통지에 중재인수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그의 답변을 통지하도록 요구된 시기까지 그 제안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권자에게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제5조 제2항으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를 1인 또는 3인 이상의 다수 중재인들로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재인들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선정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¹⁸⁾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3인의 중재인의 수에 관한 해태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계속 검토하였는데, 3인의 중재인의 해태규칙은 UNCITRAL 중재규칙의 잘 설정된 특징이며, 모델 중재법에서 재현되었고, 단독중재인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서 일정한 안전수준을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친밀함을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해졌다. 한편 단독중재인의 해태규칙의 포함을 지지하여, 해당규칙은 중재에 비용을 적게하므로써 특히 보다 빈곤한 당사자들과 덜 복잡한 사건에 더욱 접근하기 쉽게 할 것이라고 말해졌다.

작업반은 당사자들의 반대의 합의에 따라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재량을 가진 약간의 기관들이 관리하는 중재에 있어서 해태규칙으로서 1인의 중재인을 가지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라는 것을 주목하였다.¹⁹⁾

18) UNCITRAL Doc. A/CN.9/WG. II/WP.145, 6 December 2006, pp.12-13.

19)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59-60.

(2) 중재인 선정(제6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6조 제1항은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누구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a) 1인 또는 2인 이상의 성명, 그중 1인이 단독중재인이 되거나, (b) 중재인 선정권자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또는 2 이상의 기관명 혹은 인명, 그 중 한 기관 또는 한 사람이 중재인 선정권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6조 제1항 (b)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현행 중재규칙 제6조 제4항은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권자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중재인 선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의 국적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에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²⁰⁾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중재인의 선정을 취급하는 제6조 내지 제8조가 다수당사자사건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취급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을 주목하였다. 다수당사자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을 위한 2단계 절차 즉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서 다수 당사자가 있고 분쟁이 3인의 중재인에게 부탁되는 경우에 다수의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다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는 것의 포함에 대하여 지지가 표시되었다. 그러한 공동의 지명이 없고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정권자가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으로서 행동하도록 그들 중 1인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접근에서 표시된 일반원칙들에 대하여 지지가 표시되었다.²¹⁾

(3) 제3의 중재인 선정(제7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7조 제2항(b)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인 선정권자가 없거나, 또는 기히 선정된 중재인 선정권자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중재인의 선임을 거부하거나 중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기 요청한 당사자(제1당사자)는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중재인 선정권자를 지명하여 줄

20) UNCITRAL Doc. A/CN.9/WG.II/WP.145, 6 December 2006, pp.14.

21)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62.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총장이 중재인 선정권자를 지명하면, 그 중재인 선정권자에게 제2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중재인 선정권자는 중재인을 임명함에 있어 그의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규정을 수정하여 “(b)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인 선정권자가 없거나, 또는 기히 선정된 중재인 선정권자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중재인의 선임을 거부하거나 중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제1당사자는 그렇게 지명된 중재인 선정권자에게 제2의 중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제7조의2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있다.

“제1항. 다수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또다른 중재인 선정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다수의 신청인은 공동으로 그리고 다수의 피신청인은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으로서 행동할 제3의 중재인을 선택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선정이 없는 경우 중재인 선정권자는 당사자의 요청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선정을 취소하고 각각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들중 1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지명하거나, 또는 이미 행해진 선정을 확인하고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다.”²²⁾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에서 제7조 제2항의 수정은 중재인 지명 및 선정권자의 포함으로부터 생기는 부수적 개정이며, 제2항 (b)의 마지막 문장은 제4조의2 제6항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말해졌다.²³⁾

제7조의2는 작업반의 토의에 따라서 다수당사자사건에 있어서 중재인의 선정을 다루기 위해 삽입되었으며, 작업반은 기한이 제7조 제2항에 정의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²⁴⁾

(4) 중재인의 기피(제9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9조는 “장차 중재인으로 선정될 후보자는 중재인의 선정을 위해 타진하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충분한 의혹을 자아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으로 선정 또는 임명된 자는 이러한 상

22) UNCITRAL Doc. A/CN.9/WG. II/WP.145, 6 December 2006, pp.15.

23) UNCITRAL Doc. A/CN.9/WG. II/WP.145, 6 December 2006, para. 46.

24) UNCITRAL Doc. A/CN.9/WG. II/WP.145, 6 December 2006, para. 47.

황이 당사자에게 기히 통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한 사람이 장차 중재인으로서 선정을 위해 타진을 받는 때에, 그는 자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충분한 의혹을 자아낼 만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을 자기의 선정시부터 그리고 중재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이 당사자에게 기히 통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⁵⁾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취급하는 제9조가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재인의 불공정성과 비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문을 일으키는 사정들을 고지할 의무가 계속적인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가 여부를 계속 검토하였다.

모델중재법이 “그의 선정시부터 중재절차를 통하여”라는 용어로 진행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규칙은 단지 “중재인이 선정 또는 임명된 때” 그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작업반은 중재규칙상의 고지의무가 실무에서 진행적인 의무로서 해석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상의 그 문제를 넣기 위하여 그리고 모델중재법과의 일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의 진행성은 모델중재법 제12조 제1항에서 사용된 그것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명백해질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한편 작업반은 고지가 서면선언형식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²⁶⁾

(5) 중재인의 대체(제13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13조 제2항은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인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조에 규정된 중재인 기피절차 및 중재인 보궐절차가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규정을 수정하여 “당사자가 중재인이 무효의 이유로 사퇴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재인 선정권자에게 중재인의 대체 또는 다른 중재인들이 중재를 진행할 권한부여를 요청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권자가 중재의 상황이 대체중재인이 선정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

25) UNCITRAL Doc. A/CN.9/WG.II/WP.145, 6 December 2006, pp.16.

26)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64, 65.

재인 선정절차를 적용할 것인가 또는 대체중재인을 선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⁷⁾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본이 허위사퇴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적어도 모든 중재절차에 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재인의 사퇴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중재인의 사퇴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작업반에서 검토되었다. 그 하나의 선택은 다수중재인 판정부에서 사퇴는 다른 중재인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이것은 중재인이 사퇴이유를 제공하고 다른 중재인들의 정밀조사와 판정을 부탁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그리고 부적당하거나 명백히 전술적인 사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선택은 선정권자가 중재인의 사퇴를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중재인들이 중재절차의 상황과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퇴를 승인하거나 거절하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졌다.²⁸⁾

작업반은 제13조에서 사용된 용어가 중재인의 사퇴후에 대체중재인의 선정없이 남아있는 중재인들이 절차를 계속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불완전한 판정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가 여부를 계속 검토하였다. 약간의 중재판정부들은 불완전한 판정부로서 행위할 권리가 현행 중재규칙하에서 개정없이 존재하는 것임을 찾아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불완전한 판정부에 관한 규정의 포함은 불완전한 판정부제도가 적용될 상황을 취급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말해졌다. 그 규정은 그 제도를 야기할 행동의 종류, 그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예컨대, 선정권자 또는 남아있는 중재인들), 그리고 그 제도가 운영 개시할 수 있는 시점 (예컨대, 심리의 종결이후에만 또는 가능한 빨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²⁹⁾

3. 중재절차(제3장)

(1) 총칙(제15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15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는 본 규칙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쌍방을 공평하게

27) UNCITRAL Doc. A/CN.9/WG.II/WP.145, 6 December 2006, pp.18.

28)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67-67.

29)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73-74.

대우하여야 하며 중재심리의 어떤 과정에서도 각 당사자에게 진술의 완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규정의 말미에 “중재판정부는 재량의 행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회피하며 공정하고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중재절차를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제4항을 신설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시에, (a) 동일한 당사자들이 관여하며 동일한 법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본 규칙에 의한 중재에 따른다는 것과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한 중재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1인 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당사자로서 중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3자와 신청인 당사자가 동의하였음을 조건으로, 중재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에 관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⁰⁾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제15조 제1항이 중재절차가 불필요한 지연없이 중재판정부에 의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를 계속 검토하였다. 이러한 원칙의 포함은 불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다른 중재인들과 당사자들을 상대해서 모두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포함은 중재판정부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공격하도록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³¹⁾

작업반은 중재판정부앞에서 사건의 병합문제에 관한 추가조항들이 중재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계속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항의 포함은 예컨대 모든 절차들이 동일한 “법적관계”에 관련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병합을 허락하는 규칙에 따르기 위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병합을 허용한다는 ICC 중재규칙 제4조 제6항에서 취한 접근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데에 약간의 지지가 표시되었다.

그러나 중재규칙이 가끔 관리되지 않는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을 가정하면 이러한 조항의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표시되었다. 병합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상쇄청구 또는 공동청구와 같은 다른 절차들에 의해 취급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³²⁾

작업반은 제3자 개입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UNCITRAL 중재규칙 개정본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두가지 상황이 구별될 수 있다고 말해졌다. 즉 하나는 어느 사람이 예컨대, 법정의 고문진술서 형식으로 중재절차에서 심리되기를 원하는 상황이며,

30) UNCITRAL Doc. A/CN.9/WG. II/WP.145/Add.1, 6 December 2006, p.2.

31)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 76.

32)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79-80.

둘째 상황은 한 당사자가 절차에 참가되기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UNCITRAL 중재규칙 제15조 제1항은 제3자의 개입을 수락할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실무에서 제3자가 UNCITRAL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작업반은 UNCITRAL 중재규칙 개정본에서 그 문제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³³⁾

(2)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21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및 별도의 중재약정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비롯하여 중재판정부가 아무런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제2항은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존부 또는 그 유효성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본조의 목적상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본 규칙에 따른 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중재조항은 동계약의 다른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합의사항으로 취급된다. 중재판정부가 계약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법률상 중재조항의 무효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합 수정하여 “제1항.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비롯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건과는 독립적인 합의사항으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가 계약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법률상의 무효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21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답변서의 제출이전에, 또는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이전에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 수정하여 “제2항.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답변서의 제출이전에 또는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이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그가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또는 선정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이와 같은 이의신청의 제기를 방해받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그의 관할권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이의신청은 그의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된 사안이 중재절차도중에 제기되자마자 제기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느 경우에서나, 지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늦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3)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81-82.

현행 제21조 제4항은 “통상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예비심사로써 이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시켜,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최종판정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21조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수정하여 “제3항. 중재판정부는 본조 제2항에서 언급된 이의신청을 예비심사로써 또는 본안에 대한 판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⁴⁾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중재판정부가 그 자신의 관할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델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입안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당사자는 그가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또는 중재인의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어느 하나의 경우에 그가 지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다 늦은 항변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6조 제2항과 동일한 규정을 중재규칙 제21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작업반의 견해가 있었다.³⁵⁾

작업반은 국내법원에서의 불복은 중재판정부가 그 자신의 관할권에 관하여 스스로 선언을 한 이후에만 행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불복은 모델중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서 중재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추가판정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중재규칙 제21조가 명확히 하여야 하는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적 및 실무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국내법들이 법원들로부터 불복을 추구할 취소불능의 권리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작업반에서 불복에 관하여 제의된 어떠한 규정은 한 당사자가 특히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적당하게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까지 법원에서의 불복을 행사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입안되어야 한다고 진술되었다.³⁶⁾

(3) 임시적 보전조치(제26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부

34) UNCITRAL Doc. A/CN.9/WG. II/WP.145/Add.1, 6 December 2006, p.8.

35)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97-98.

36)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99-101.

패성이 있는 물품의 매각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물품의 보관을 명하는 등, 분쟁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물품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의 대상에 관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임시적 보전조치는 판정의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보전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사법당국에 임시적 보전조치를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신청은 중재계약과 모순되지 아니하며 또한 중재계약의 포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26조의 규정을 모두 삭제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중재판정부는 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시적 보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2항 “임시적 보전조치는 분쟁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판정을 내리기 전 어느 때 라도 중재판정부가 한 당사자에게 다음사항을 명하는 임시조치이다 : (a) 분쟁의 결정중에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복구하는 것; (b) 중재절차 자체에 현재의 또는 절박한 손해 또는 불리를 일으킬 듯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c) 후속 판정이 만족될 수 있는 자산을 보존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또는 (d) 분쟁의 해결에 관련되거나 또는 중요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

제3항 “제2항 (a), (b) 및 (c)에 따라서 임시적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사항을 중재판정부에 만족시켜야 한다. : (a) 임시적 보전조치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배상 판정에 의하여 적당하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일어날 것 같고, 또한 임시적 보전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그러한 손해가 그 조치를 지시받는 당사자에게 일어날 것 같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가중시킨다는 것; (b) 신청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실체에 관하여 승소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결정이 후속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제4항 “제2항 (d)에 의한 임시적 보전조치의 신청에 관하여 제3항 (a) 및 (b)의 요건은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제5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시 또는 예외적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시지 판정부의 직권으로, 내려진 임시적 보전조치를 수정,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제6항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그 조치와 관련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보전조치가 신청되거나 또는 내려진 근거가 되는 상황의 실질적 변경을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항 “임시적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추후 그 상황에서 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

용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부는 절차 진행 중 어느 때라도 그러한 비용과 손해를 판정할 수 있다.³⁷⁾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UNCITRAL 중재규칙 제26조가 UNCITRAL 제39차 회기에서 채택된 모델중재법의 새로운 제4장A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개정되어야 하는 가를 검토하였다. 중재규칙 제26조가 모델중재법의 새로운 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작업반의 일반적인 견해이었으며, 임시적 조치에 관한 개정규정들은 모델중재법 제4장A에 일치하여 임시적조치를 부여하기 위한 상황,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그들이 제4장A에 규정된 당사자자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입안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작업반은 중재규칙의 성질을 가정하면 제4장A에 포함된 많은 규정들 가운데 임시적 조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과 같은 것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³⁸⁾

4. 판정(제4장)

(1) 결정(제31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판정부가 내리는 판정 기타의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1항의 말미에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이 없는 경우에, 판정 또는 기타 결정은 의장중재인 단독으로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⁹⁾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제31조 제1항이 3인의 중재판정부인 경우에 판정은 중재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과반수 찬성의 결정이 행해질 수 없는 경우에 정돈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조항을 개정할 것이 제의되었다. 즉 한가지 해결방법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과반수의 찬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의장중재인이 단독중재인인 것처럼 판정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기 위하여 제31조 제1항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해졌다.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 의장중재인은 과반수찬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동중재인들 중 가장 비합리적인 자와 그의 의견을 타협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고 말해졌다. 그러나 이

37) UNCITRAL Doc. A/CN.9/WG.II/WP.145/Add.1, 6 December 2006, p.11-12.

38)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104-105.

39) UNCITRAL Doc. A/CN.9/WG.II/WP.145/Add.1, 6 December 2006, p.15.

러한 규정이 의장중재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우려가 표시되었다.

한편 제의된 규칙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보가 표시되었으며, 과반수 찬성의 결정요건은 UNCITRAL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미국중재협회 (AAA) 중재규칙과 같은 다른 성공적인 규칙들의 잘 알려진 특징이라고 제안되었다.⁴⁰⁾

(2) 판정의 형식과 효력(제32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은 “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판정의 효력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 제32조 제2항의 말미에 “그리고 포기가 유효하게 행해질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법원 또는 기타 소관관청에의 어떠한 형식의 항소, 재심리 또는 상환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추가 규정하고 있다.

현행 중재규칙 제32조 제5항은 “중재판정문은 당사자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규정을 수정하여 2가지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선택1안은 “중재판정문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2안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추구할 법적 의무에 의하여 또는 법원 또는 소관관청 앞에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내에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¹⁾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에서 개정된 중재규칙은 판정이 법원 또는 다른 관청에의 항소 또는 다른 불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⁴²⁾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의되었다. 새로운 조항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그들에 의해 자유롭게 포기될 수 있는 이러한 불복의 형식들 (예컨대, 약간의 관할권, 법률의 관점에 관한 항소에 있어서)을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한 판정에 대한 이의 (예컨대, 관할권의 부재, 적정한 절차의 위반 또는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타 판정의 취소사유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졌다.⁴³⁾

작업반에서 제32조 제5항에 포함된 규칙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이

40)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108, 109, 111.

41) UNCITRAL Doc. A/CN.9/WG.II/WP.145/ADD.1, 6 December 2006, p.15-16.

42) ICC 중재규칙 제28조 제6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규칙 제26.9조.

43)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 114.

공개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뒤집혀질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제32조 제5항의 개정은 한 당사자가 판정 또는 그의 취지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추가 제의되었다.⁴⁴⁾

작업반은 판정을 내릴 기한이 부과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기한의 존재는 기관중재규칙에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실무에서 이러한 기한의 연장이 제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주목되었다. 중재판정부가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선택권을 가지는 기한의 포함에 대하여 약간의 지지가 표시되었다.

관리되지 않는 중재에 있어서 기한의 연장가능을 취급할 기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그 제의에 대하여 유보가 표시되었다. 한편 임의의 기한을 부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판정을 내리는 데에 부당한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의 포함에 의하여 융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의되었다.⁴⁵⁾

(3) 준거법, 우의적 중재(제33조)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중재규칙 제33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것을 지정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이러한 준거법의 지정이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쟁에 관한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현행규정을 수정하여 2가지 선택안과 변형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선택1안은 현행규정중 “법률(law)”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선택2안은 현행규정중 “법률”을 “법규(rules of law)”로 수정하고 있다. 변형1안은 현행규정중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쟁에 관한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변형2안은 상기규정을 “사건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으로 수정하고 있다.⁴⁶⁾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현행 UNCITRAL 모델중재법 제28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규(rules of law)” 용어가 또한 UNCITRAL 중재규칙 제33조의 “법률(law)” 용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점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표시되었고, 사무국은 장래회기에서 작업반의 검토를 위해 대체안을 준비하도록 요구되었다.

당사자간에 준거법의 지정이 없으면 분쟁에 관한 법규를 참조한다는 결석규정을 가장 밀접하게 분쟁에 관련된 법규의 직접적 선택에의 참조로 대체하자는 또다른 제의가 있었다.⁴⁷⁾

44)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 115.

45)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 118-119.

46) UNCITRAL Doc. A/CN.9/WG.II/WP.145/ADD.1, 6 December 2006, p.17.

5. 중재인의 책임, 일반원칙(제안된 추가조항)

(1) 중재인들의 책임(추가조항)

1) 개정안의 내용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중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인 선정권자는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결과를 제외하고,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은 책임의 의문이 판례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조항이 중재인들의 책임을 제한하든지 또는 배제하든지 간에 UNCITRAL 중재규칙에 포함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였다. 또한 책임에 관한 조항은 중재인들의 윤리규범을 준비하는 조항들이 수반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⁴⁸⁾

(2) 일반원칙(추가조항)

1) 개정안의 내용

중재작업반 개정안은 본 중재규칙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본 중재규칙의 해석에 있어서 그들의 국제적 연원 및 성실의 적용과 준수에 있어서 통일을 증진할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중재규칙에서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는 본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사안들에 관한 의문은 본 규칙이 근거로 하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해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안의 쟁점

작업반에서 이 조항은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새로운 제2A조에 맞추어 그들의 국제적 원본에 따라서 중재규칙을 해석하는 규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이 조항의 두 번째 문구는 중재규칙이 계약적 규범의 독립적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재규칙의 공백이 적용될 절차법의 비강제적 조항에 관계없이 중재규칙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채워질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다.⁴⁹⁾

47)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122-123.

48)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 136.

49) UNCITRAL Doc. A/CN.9/WG. II/WP.145/ADD.1, 6 December 2006, para. 48.

IV.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과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 중재규칙의 비교 검토

1. 적용범위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1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현행규정의 문안을 일부 수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규칙의 변경에 관한 수정에 합의했을 경우 중재개시일자에 유효한 중재규칙이 적용된다는 문안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1조는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 제정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중재규칙과 기존 시행하고 있는 중재규칙간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⁰⁾

2. 통지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2조 제1항2는 “통지는 전자통신에 의해 배달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는 통지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비록 우리나라 중재법 제4조가 서면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의 개념에 전자적 통신수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⁵¹⁾ 현재 많은 중재규칙들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지의 배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중재실무에서 전자통신에 의한 통지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중재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²⁾

3. 중재인 선정권자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4조의 2는 중재인 선정권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 조 제2항에서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권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인 선정권자

5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1) 양병희 외8인, 「주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 한국중재학회, 2005. p.15.

5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4조 제2항은 통지나 교신은 수령증을 받는 교부송달, 등기우편, 택배, 텔렉스, 전신 또는 송신기록이 남는 다른 교신수단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중재인 선정을 거부 또는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중재인 선정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³⁾ 그러나 UNCITRAL 중재규칙이 주로 임시중재를 위한 것이므로 기관중재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를 수용하여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중재인의 수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5조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중재인을 1인으로 한다는 개정안과 중재인 선정권자에게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2가지 선택안을 두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3조는 중재합의에서 중재인의 수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무국이 1인 또는 3인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0조 제2항에 당사자가 중재인의 수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을 수용하여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다수당사자중재의 중재인 선정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1항은 다수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하며,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이 제3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는 다수당사자중재의 중재인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현실적으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⁵⁾

5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는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단독중재인이 선정되지만, 일반 당사자가 사무국에 3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무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중재인은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제3항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각각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중재절차에서 사건의 병합 및 제3자 개입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15조 제4항 (a)는 당사자가 동일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병합을 중재판정부 앞에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제4항 (b)는 중재절차에서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는 중재판정부 앞에서의 사건의 병합 및 중재절차에서 제3자의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UNCITRAL 모델중재법에도 이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이들을 허용할 때 중재절차의 지연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을 수용하여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임시적 보전조치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26조는 임시적 보전조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제2항은 중재판정부가 명하는 임시적 보전조치의 내용, 제3항은 임시적 보전조치의 신청요건, 제5항은 임시적 보전조치의 수정, 정지 또는 종결, 제7항은 임시적 보전조치의 근거상황의 변경에 대한 공개, 제8항은 임시적 보전조치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41조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보전처분의 지시 및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의 명령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가운데 임시적 보전조치의 내용 및 임시적 보전조치의 신청요건 등의 규정은 임시적 보전조치의 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 판정의 효력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제32조 제2항은 판정의 효력으로서 최종적, 당사자 구속 그리고 당사자의 판정내용 이행의무이외에 법원 또는 소관관청에의 항소, 재심리 또는 상환청구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49조는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판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는 바, 비록 우리나라 중재법 제35조가 중재판정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재판정의 구체적 효력에 관하여는 판결

에 비하면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⁵⁶⁾ 따라서 중재판정의 구체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⁷⁾

9. 중재인들의 책임 및 해석의 일반원칙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은 추가조항으로서 중재인들의 책임에 관하여 고의적 불법 행위를 제외하고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본 중재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국제적 연원 및 성실의 적용과 준수 그리고 본 규칙의 근거가 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1조 제1항은 이 규칙의 해석 및 적용은 그 분쟁사건을 담당하는 중재판정부가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중재인들의 책임 및 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재인의 책임요건과 중재규칙의 해석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⁵⁸⁾

V. 결 론

중재작업반에서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의 일반원칙으로서 개정의 초점은 중재실무에서 지난 30년이상 발생한 변화에 충족하기 위하여 중재규칙을 현대화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 검토되었다. 원래 UNCITRAL 중재규칙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이용될 작정이었고 따라서 중재규칙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적 접근이 취해졌다. 한편 실무에 있어서 UNCITRAL 중재규칙이 이용된 중재의 형태는 적어도 4가지, 즉 중재기관이 관련되지 않은 (때때로 임의(ad hoc) 중재로 언급되는 형태) 사적 당사 당사자들간의 분쟁,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 국가 대 국가간 분쟁 및 중재기관들에 의해 관리되는 상사분쟁 등이 있었다.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에 있어서 작업반은 일반적 접근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또는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다른 형태의 중재 또는 분쟁들을 특별히 취급하는 그리고 UNCITRAL 중재규칙의 병행본이나 부록들에 포함이 가능한 규정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⁵⁹⁾ 작업반 토의에서 특별한 상황의 취급에 우선하여 분쟁의 내

56) 양병희 외8인, 전게서, p.173.

5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1조 제2항은 판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6조는 이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과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판정이 법률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16-17.

용에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중재에 적용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일반적 접근에 폭넓은 지지가 표시되었으며, UNCITRAL 중재규칙의 구조 및 정신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UNCITRAL 중재규칙의 규정들을 이에 상응하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규정들과 조화시키는 것이 자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적절한 경우에만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⁶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과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간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국제화를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 가운데 주요한 일부 조항 즉 적용범위, 통지, 다수당사자중재의 중재인 선정, 임시적 보전조치, 판정의 효력, 중재인들의 책임 및 해석의 일반원칙 등에 관한 조항들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이 그동안 중재작업반에서 토의 제시된 시안으로서 최종 개정안이 아니며, 향후 중재작업반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이후에도 계속하여 UNCITRAL 중재작업반의 UNCITRAL 중재규칙 개정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 중재규칙의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92.
 광영실·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두남, 200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2004. 12. 13.
 _____, 「국제중재규칙」, 2007.2.1.
 _____, 「외국중재법규집 제1집」, 2005.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박상조·주기종·윤종진, 「국제상사중재론」, 한울출판사, 1997.
 법무부, 「국제상사중재제도」, 1999.
 양병희 외 8인,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2005.
 이순우, 「상사중재론」, 법경사, 1998.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0.
 정기인, 「상사중재론」, 무역경영사, 1992.

60) UNCITRAL Doc. A/CN.9/614, 5 October 2006, paras. 18, 19, 21.

- Born, Gra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ransnational Publishers, 2001.
- Baker, Stewart Abercrombie, Davis, Mark Davi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s Practice : The Experience of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 Caron, David D., Caplan, Lee M. & Pellonpaa, Matti,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Sanders, Pieter, *The Work of UNCITRAL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 Tweeddale, Andrew & Tweeddale, Keren,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 International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12. 15.
- _____, Internation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6. 21.
- _____, Doc. A/CN.9/61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fifth session (Vienna, 11-15 September 2006), 5 October 2006.
- _____, Doc. A/CN.9/WG.II/WP.145 and Add.1,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6 December 2006.
- _____, Not An Official UNCITRAL Document,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A report by Jan Paulsson and Gorgios Petrochilos", 9 June, 2006.
- _____, Doc. A/CN.9/WG.II/WP.143 and Add.1,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Working Group II(Arbitration), 20 July 2006.
- _____, Doc. A/CN.9/59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fourth session (New York, 23-27 January 2006)", 27 February 2006.
- _____, Doc. A/CN.9/610, "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Possible future work in the field of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5 April 2006.
- UNCTAD International Trade Centre,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01.
- 中村達也, 「國際商事仲裁入門」, 中央經濟社, 2001.
- http : //www.uncitral.org (UNCITRAL)

ABSTRACT

A Study on the Draft and Issues for the Revision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Kang-Bin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discussion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considered by the Working Group. At its thirty-ninth session (New York, 19 June-7 July 2006), the Commission agreed that, in respect of future work of the Working Group, priority be given to a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At its forty-fifth session (Vienna, 11-15 September 2006), the Working Group undertook to identify areas where a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ight be useful. At that session, it was considered that the focus of the revision should be on updating the Rules to meet changes that had taken place over the last thirty years in arbitral practice.

The largely amended provision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e as follows : Notice of arbitration and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Article 3), Designating and appointing authorities (Article 4 bis), Number of arbitrators (Article 5), Appointment of arbitrations (Article 6), Appointment of arbitrators in multi-party arbitration (Article 7 bis), Challenge of arbitrators (Article 9), Replacement of an arbitrator (Article 13), Pleas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 21), Interim measures (Article 26), Form and effect of the award (Article 32), and Liability of arbitrators (Proposed additional provis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 Arbitration Rules. In order to internationalize the Korea's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t is desirable that the main article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ould be admitted to the KCAB Arbitration Rules.

In conclusion, the Commission was generally of the view of any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ould not alter the structure of the text, its spirit, its drafting style, and should respect the flexibility of the text rather than make it more complex. The Working Group agreed that harmonizing the provisions of the UNCITRAL Model Law should not be automatic but rather considered only where appropriate.

Key Words : UNCITRAL Arbitration Rules,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Revision Draft of Arbitration Rules, KCAB Arbitration Rules, UNCITRAL Model Law